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과제

Challenges for Safe Utilization of Public Open Data and Protection of Data Subject in Healthcare



최경진 교수
가천대학교 법학과

- Key Points**
-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중요성
 - ☑ 현행법 상의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과 데이터 3법의 개정에 따른 영향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 보호를 위한 과제
- Key Words** 개정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건의료정보, 공공데이터
Revised 3 Data Laws, Personal Data, Health Care Data, Public Data

1. 들어가며

미래는 데이터 경제의 시대라고도 하고, 지능정보사회라고도 한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는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사람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대신 처리해 주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예측을 통하여 사람에게 닥칠 위험을 대비하게 하거나 더 빠르고 지능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결국 데이터가 있다. 우리에게 큰 편익을 주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더 똑똑해질 수 있다. 머신러닝을 통하여 더 나은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미래 사회의 원유 혹은 쌀 등으로 비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데이터의 중요성은 보건의료분야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보건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더욱 데이터가 중요하다. 우리가 질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질병에 관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IBM Watson for Oncology 활용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보건의료 데이터는 다른 어떤 데이터보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신약을 개발하거나 처방이나 투약의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안전한 치료법을 찾거나 대유행을 낳는 질병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모든 보건의료 활동에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똑똑하게 처리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더 많은 공익적 효과를 꾀하고 있다.¹⁾

그러나 아무리 사람에게 이로운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효용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의 집적과 지능적 처리는 특정 개인과의 연결과 그 개인에 대한 추적, 사적인 영역에 대한 침해 등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데이터는 항상 개인정보보호의 이슈도 동반한다. 공공데이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대하여도 개인정보의 예외를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의 집적·공개·활용을 통한 편익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라는 규제의 필요성이 서로 상충 또는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주체를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되는 법제도적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이하에서는 현행법 하에서의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 상황을 분석하고, 최근 데이터 3법의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법적 규율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 보겠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팬데믹 상황 하에서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규율의 의미를 살펴본 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바람직한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활용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겠다.

1) 2020년 6월 현재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하여 35종의 공공데이터, 20종의 Open API, 240계정의 원격분석시스템, 의료통계정보로서 127건의 Sheet, 40건의 Chart를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의 예로서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코로나-19 병원 정보, 요양기관 현황 정보, 환자 코호트 자료, 의료영상진료정보조회서비스 등이 있다.

3. 현행법 하의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

가. 개인정보 보호법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한 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정보보호를 규정한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와 같은 독자적인 의료정보보호법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건의료정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물론 「의료법」이나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의료 관련법에서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상세히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일부 규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나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²⁾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처리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합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수집 단계에서 합법적 처리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집 목적 외로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한 때에 적법한 처리로 인정된다. 수집단계에서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에 합법적인 처리로 인정된다.³⁾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거나 위 수집 시 적법 처리 기준 중 (2), (3), (5)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법한 제공으로 인정된다.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2) 예를 들면, 「의료법」 제21조의2 제9항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 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9)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해당됨)에만 허용된다.⁵⁾ 이외에도 여러 처리 기준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한다. 합법적 처리는 법에 규정된 경우 혹은 동의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원칙적으로 처리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⁶⁾

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⁷⁾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일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⁸⁾ 그런데 공공데이터법에 의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이 개인정보이다.⁹⁾ 따라서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6)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7)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1항

8) 공공데이터법 제29조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만, 비공개정보의 예외로서 (1)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과 같은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허용된다.

다. 현행법에 따른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활용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데이터법에 의하면,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며,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개인정보처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일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제한에 따라 민간에서 활용가능한 공공데이터의 범위는 사실상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보의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빅’데이터라고 부를 정도로 수많은 데이터가 민간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이러한 법적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데이터 3법의 개정과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에 대한 영향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들 3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따라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¹⁰⁾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개인정보 개념 정의 및 적용범위의 합리화,¹¹⁾

10)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음.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이 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11) 개인정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즉,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1) 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이다(제2조 제1호). 나아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제58조의2 신설) 개인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2) 가명정보 활용 근거 마련,¹²⁾ (3)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일원화,¹³⁾ (4) 양립가능성에 근거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허용,¹⁴⁾ (5)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일원화¹⁵⁾로 요약할 수 있다.

개정 데이터 3법에 의하면, 보건의료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의 범위가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어 기존보다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로서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대상범위가 합리화 및 명확화되어 민간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립가능성에 따른 제공이나 가명정보의 제공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가명정보로 만들어서 민간에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민간의 가명정보와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확대하였다는 점은 데이터 3법 개정의 매우 중요한 효과로 볼 수 있다.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의 보호

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개인정보의 의미와 규율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이 방역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준 결정적 계기였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K-방역을 성공시킨 대표적인 수단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보건의료 정보가 개인정보의 침해,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동선 추적 정보 공개와

12)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하였다(제2조 제1호의2 신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였다(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제28조의4 신설), 누구든지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보호를 꾀하였다(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하며, 현행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제7조, 제7조의8 신설, 부칙 제9조).

14)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 신설).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였다(제6장 신설 등).

관련한 주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보건의료 정보는 향후 새로운 팬데믹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공공데이터나 개인정보의 활용과 함께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제도를 정비하고 적용해가야 할 것이다.

나.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 보호의 조화

1) 개인정보보호법과 조화되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시각의 전환과 세밀한 규제 접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지능정보사회에서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를 보호하면서 민간의 안전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원칙과 조화되는 세밀한 공공데이터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준 혹은 사례의 집적을 통하여 맥락에 맞는 규율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8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이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제공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준수되는 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만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는 배타적이거나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적 근거나 절차에 따라 합리적·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의 보호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여야 한다.

2) 가명처리 및 결합 사례 유형화를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범위 명확화

개정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가명처리를 통한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제공 가능성이 생겨나서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가명화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하거나 비식별화하여 제공하거나 가명처리 된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와의 결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가명화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민간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민간에 제공된 가명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나마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더 큰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합리적·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명처리 된 보건의료 공공

데이터의 범위와 방법·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면서도, 해당 방법과 절차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최대한 수집·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규제 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투명성 강화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확대될 수 있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나 의료 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자의 권리 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 또는 가명화하여 민간에 제공 또는 결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는 확고하게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명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투명성 확보와 적법절차에 따른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활용의 조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6. 나가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의미를 재고하고 활용과 보호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조화되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시각의 전환과 세밀한 규제 접근 필요하고, 가명처리 및 결합 사례 유형화를 통한 공공데이터 활용 범위를 명확화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보호를 통해 보건의료 공공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opendata.hira.or.kr (검색일자 2020.6.13.)

개인정보 보호법. 제14839호(2017. 7. 2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839호(2017. 7. 26.)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제16930호(시행 2020.8.5.)